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14호]

#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

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\*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\* 舊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+ 舊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

2025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○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제조DX멘토단)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·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

#### <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>

구분	지원 기간	지원 규모	지원 한도	지원 비중	접수	평가 선정
사전 기획	3개월(8회)	1,000개사 내외	238만원	85%	'25.3월~수시	수시
구축 지도	3개월(4회)	100개사 내외	119만원	85%	최종 협약 후 2주 이내	수시
사후 관리	4개월	250개사 내외	최대 1,900만원	50%	'25.1월~3월	'25.4월~6월

<sup>\*</sup>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

# □ 신청 자격

-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 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    - \* 종된 사업장의 경우,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

### □ 지원 제외 사항

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
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□ 유의사항

- ㅇ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
- 각 유형별 세부공고는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 므로 추후 해당 지역별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
- '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'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등)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있음

# 2. 유형별 세부내용

# ① 사전 기획

# □ 지원 대상

○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# □ 지원 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	
사전 기획	■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(예시)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,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·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■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		

## 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1,000개사 내외
-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85% 지원

구 분		지원방법	지원기간	사업비(분담비율)			
	т <del>с</del>	시편하다	시전기간	정부지원	민간부담		
	사전 기획	DX멘토단 1인 x 8회	최대 3개월	238만원(85%)	42만원(15%) * VAT미포함		

#### □ 신청기간

○ 2025년 3월 3일 (월) ~ 예산 소진시

## 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(사전기획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		
1	사업 신청서		
2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	
3	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		
4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	
5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		

<sup>\*</sup>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# □ 지원절차



# ② 구축지도

## □ 지원대상

○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

#### □ 지원 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	
구축 지도	■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(예시)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,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등 ■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		

#### 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100개사 내외
- o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85% 지원

구 분		지원방법	지원기간	사업비(분담비율)			
Т	문 시원당합 시원기간 정부:		정부지원	민간부담			
구축 지	도	DX멘토단 1인 x 4회	최대 3개월	119만원(85%)	21만원(15%) * VAT미포함		

## □ 신청기간

○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주 이내

# 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(구축지도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
1	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

#### □ 지원절차



#### ③ 사후관리

### □ 지원대상

- 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<sup>\*</sup> 또는 '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<sup>\*</sup>
- ②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\*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\*\* 보유 기업
  - \*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(단,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  - \*\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

# □ 지원 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
	■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
	■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
사후 관리	* (S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추가 지원 ** (H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· 결함수리, 기능 개조 지원 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
	■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

※ <sup>①</sup>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<sup>②</sup>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<sup>③</sup>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

#### <지원 부적정 항목(예시)>

-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(예시 :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·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,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)
- 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(예시: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,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)
- 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(예시: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(주기적 활동)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)

#### □ 지원 범위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 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

지원항목	지원내용
프로그램 수정·개선	◆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◆ 수정 프로그램 개발 ◆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◆ 화면 UI 수정
시스템 유지관리	◆ 공정 개선, 생산품목·원자재 변경,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◆ 공정, 생산장비,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(센서,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)과 분석·활용 지원
데이터 관리	◆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◆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◆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(품목정보, 공정정보, 단가, 입출고 정보 등) ◆ DB 최적화
사용자 운영 지원	◆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◆사용자 교육 지원 ◆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◆단말기, 스캐너,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
기타	◆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(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)

### 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250개사 내외
- o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50% 지원

구 분		지의바버	지원기간	사업비(분담비율)		
	구 분 지원방법		시원기인	정부지원	민간부담	
	사후관리	총 사업비의 50%	4개월 <sup>*</sup> (연장 2개월)	최대 19백만원(50%)	최대 19백만원(50%) * VAT미포함	

\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, 최대 6개월 초과 불가

### □ 신청기간

-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시작일\* ~ 3월 31일 (월) 17:00까지
  - \*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(제조혁신센터)에서 별도 공고(1월 말~ 2월 초 예정) 하므로,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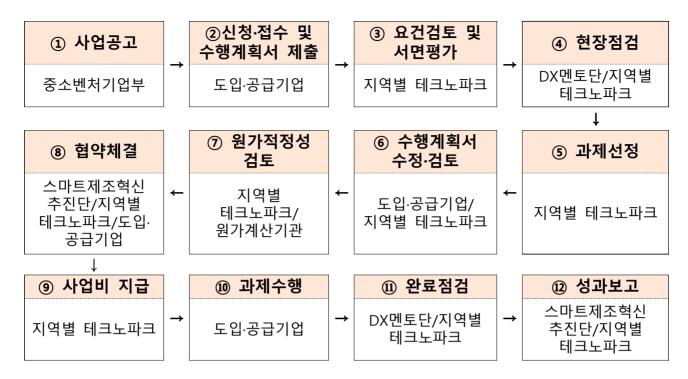
## 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후관리 지원사업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
1	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*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(지역 제조혁신센터(TP)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)
2	사업자등록증명원
3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・조회 동의서
5	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<sup>*</sup>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
6	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

\*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## □ 지원절차



- ※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: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(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)
- ※ ④ 현장점검 : 외부전문가 1인(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)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(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)
- ※ ⑦ 원가적정성 검토 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

# □ 평가항목

- (서면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
  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후보대상으로 선정
  - \* 지역 테크노파크별 가점(최대 5점) 부여 가능하며, 가점 항목은 추후 지역 테크노 파크별 별도 공고 확인

#### 【사후관리지원 평가항목】

	평 가 항 목		평가 등급				
구분			양호	보통	다소 미흡	미흡	
사후관리	○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			
지원 대상 적합성	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			

	○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			(○/×)		
사후관리 지원 적정성	○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	15	12	9	6	3
	○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	15	12	9	6	3
(40)	○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	10	8	6	4	2
관리 및	○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·운영 보유 역량	15	12	9	6	3
활용 (45)	○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	15	12	9	6	3
	○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·활용 노력	15	12	9	6	3
지원성과 (15)	○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	15	12	9	6	3
가점 (5)	○별도 가점(최대 5점,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(TP)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)					
평가 점수						
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)		□ 적합			□ 부적합	

 (현장점검)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

#### □ 유의사항

-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-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
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
-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
- 교부 보조금의 관리·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,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
  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-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# 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	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2-944-6032/6036
부산	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1-974-9154
대구	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602-1864/1860
경북	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819-3056~8
포항	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4-223-2242/2244
광주	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0200
 전남	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1-729-2581~4
제주	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4-720-3039
 경기	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00-3100
경기북부 <sup>*</sup>	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39-5145,5147
인천	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2-260-0621~4
대전	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2-930-4351~2
충남	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1-589-0705
세종	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4-850-2151/2154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646/8910
		,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646/8910
울산 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646/8910

<sup>\*</sup> 경기북부 : 파주시, 고양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구리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의정부시